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19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문진석・황정아・조인철

문정복 • 권향엽 • 이광희

이병진 · 김교흥 · 장종태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 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 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 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 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 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 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
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	용 등) ①
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	
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	
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	
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	
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	
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	
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	
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	
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u>100</u> 분의 50의 범위에서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